대통령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연 월 일	2020. 04. 14.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1천분의 0.2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출연 대상 대출금 범위를 다른 중소기업 대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출연은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1천분의 0.4로 상향

나. 금융회사 출연대상 대출금 조정(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범위를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사목 중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하목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거목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서목의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어목의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서목에 따른 대출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서목에 따른 대출업무에 따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 [별표]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제5조의 3제1항 관련) 1.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2에 다음 표에 따라 더하거나 뺀 비율로 한다.	**제5조의3 [별표]**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제5조의 3제1항 관련) 1. ---------- 연 비율 1천분의 0.4 ----------. 다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 모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이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8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비율 1천분의 0.2의 출연요율을 적용한다.
구분 /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대위변제 금액/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1 미만: - 연비율 1천분의 0.04 1이상 ~ 2미만: - 연비율 1천분의 0.02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비율 1천분의 0.02 4이상: + 연비율 1천분의 0.04	구분 /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대위변제 금액/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1 미만: - 연비율 1천분의 0.04 1이상 ~ 2미만: - 연비율 1천분의 0.02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비율 1천분의 0.02 4이상: + 연비율 1천분의 0.0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① (생 략)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 바 (생 략)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	**제5조의2(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을 제외한다)**
아. ~ 파 (생 략)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것 너. ~ 버. (생 략)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아. ~ 파 (현행과 같음) 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너. ~ 버. (현행과 같음) 서.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서목에 따른 대출업무에 따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저. ~ 처. (생 략)	저. ~ 처. (현행과 같음)
<신 설>	커.「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